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5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이병도, 김 경, 김성준,
김춘곤, 남창진, 유정인,
이영실, 이원형, 임종국,
정준호, 한 신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조례의 정의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탄소중립을 명시하여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분야별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 시책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정의에 탄소중립의 개념을 명시함(안 제2조).
- 나.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활성화를 조성계획에 명시함(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 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의 분야별 정책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4항 신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p>
<p>제3조(기본원칙) ① (생략)</p>	<p>제3조(기본원칙)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6. (생략)</p> <p>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p>	<p>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p>

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변화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 (현행 제4항과 같음)